

소 장

원 고 1. 김〇〇 (주민등록번호)

2. 이〇〇 (주민등록번호)

3. 이〇〇 (주민등록번호)

위 원고들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(우편번호 000-000)

위 원고 2, 3은 미성년자이므로
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: 김〇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- 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다음부터 아파트라 한다)의 소유자인 망 이◉◎와 임대차보증금 5,000만원,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 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○○. ○. ○.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이●●가 20○○. ○. ○.에 사망하여, 상속인 인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.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○○. ○. ○.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통고서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,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○○. ○. ○.이후 에도 원고들의 위 아파트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 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1.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
1.갑 제4호증 통고서
1.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1.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	각 1통
1. 토지대장등본	1통
1. 소장부본	1통
1 송달료납부서	1톳



2000. 0. 0.

위 원고 1. 김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2. 000

3. 000

원고 2,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〇〇(서명 또는 날인)

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○○아파트 가동 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

1층 000.00 m²

2층 000.00 m²

3층 000.00 m²

4층 000.00 m²

5층 000.00 m²

6층 000.00 m²

7층 000.00 m²

지층 000.00 m²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가-5-505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

면적 5층 505호 OO.Om²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○○○○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○○○○분지 ○○.○○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c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